



법 무 부

수신자 난민인권센터 귀하 (우 0337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혁신파크 1동 401A호)

(경유)

제 목 정보 (공개 부분 공개 비공개) 결정 통지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접수번호 9181938	접수일 2022. 04. 14.
--------------	-------------------

청구 내용	난민 인정 심사·처우·체류 지침
-------	-------------------

공개 내용	난민인정심사 처우 체류지침 중 '난민신청자 등 체류관리 및 사범심사 등'(위.변조 여권 행사자 및 밀입국자 조치사항, 밀입국자에 대한 체류허가 및 사범심사 제외*)에 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최근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서울고등법원 2021누64551) 결과에 따른 비공개 범위
-------	---

공개 일시	2022. 04. 27. 17	공개 장소	
-------	------------------	-------	--

* 수수료를 추가납부 하여야 할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부득이하게 공개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개 방법	<input type="checkbox"/> 열람·시청 <input type="checkbox"/> 사본·출력물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자파일 <input type="checkbox"/> 복제·인화물 <input type="checkbox"/> 기타
-------	---

수령 방법	<input type="checkbox"/> 직접 방문 <input type="checkbox"/> 우편 <input type="checkbox"/> 팩스 전송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정보통신망 <input type="checkbox"/> 전자우편 등
-------	---

납부 금액	① 수수료	② 우송료	③ 수수료 감면액	계(①+②-③)
	0원	0원	0원	0원
	납부일	수수료 산정 명세		수수료 납입계좌(입금 시)
				[]

* 귀하의 청구에 따른 정보공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상기와 같이 수수료를 산정하였으나, 사본제작 후 수수료 금액이 상이하여 사후 정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비공개외 (전부 또는 일부) 근거 조항	국방 등 국익침해
-----------------------	-----------

비공개 (전부 또는 일부) 내용 및 사유	비공개 근거 조항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p>다만, 기타 사항은 공개 시 출입국관리행정에 있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고, 난민인정심사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5호에 따라 비공개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최근 확정된 위 판결(서울고등법원 2021누64551)은 난민인정심사 처우 체류지침 중 체류관리 및 사범심사에 관한 사항을 다룬 것으로, 그 밖에 지침 전체에 대한 정보공개소송은 현재 계속 진행 중인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	---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 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법무부장관

출입국관리주사보 정미진

서기관

이기흠

협조자

시행 난민정책과-1389(2022. 04. 27.)

우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법무부

전화번호 02-2110-4160

팩스번호 02--

/ zmeiz20@korea.kr

/ 공개 구분

난민인정 심사 · 처우 · 체류 지침

2020. 4.

<지침 제·개정 연혁>

- ▣ 2013. 06. 28. 난민인정업무 처리지침 제정
- ▣ 2013. 07. 24. 난민처우지침 제정
- ▣ 2014. 02. 07. 통합지침 제정
- ▣ 2014. 07. 04. 일부 개정
- ▣ 2015. 04. 16. 일부 개정
- ▣ 2015. 04. 27. 일부 개정
- ▣ 2016. 07. 27. 일부 개정
- ▣ 2016. 10. 07. 일부 개정
- ▣ 2017. 06. 30. 일부 개정
- ▣ 2018. 02. 12. 일부 개정
- ▣ 2018. 07. 31. 일부 개정
- ▣ 2018. 10. 01. 일부 개정
- ▣ 2019. 07. 01. 일부 개정
- ▣ 2020. 04. 17. 일부 개정

법 무 부
난 민 정 책 과

목 차

IV. 난민신청자 등 체류관리 및 사범심사 등

1. 체류관리 및 사범심사 일반원칙	68
2. 난민신청자 체류관리 및 사범심사	71
가. 체류자격 부여·연장·변경 등	71
나. 취업허가	77
다. 법 위반자 등 체류허가 및 사범처리 기준	78
1) 난민신청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변경·연장 등 제한자 처리기준	
2) 난민심사 진행 중 체류기간 초과자 처리 기준	
3) 위·변조 여권(사증·심사인 위변조 포함) 행사자 및 밀입국자 조치사항 [비공개]	
4) 밀입국자에 대한 체류허가 및 사범심사 [비공개]	
5) 난민신청자 불법취업자 처리방안	
6) 벌금형 확정자 처리방안	
7) 국내 입국 전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행위자 처리방법	
8) 신원확인 등 난민신청자의 보호 및 해제절차	
9) 난민소송 제기자 등 조치사항	
3. 인도적체류자 체류관리	88
가. 체류자격 부여·연장·변경 등	88
나. 취업허가	91
다. 가족결합	92
라. 범위반자 처리방법	94
마. 체류허가 취소 및 기간연장 등 불허	95
4. 난민인정자 체류관리	96
가. 체류자격 부여·연장·변경 등	96
나. 영주자격 변경	98
다. 난민여행증명서 신청 및 발급	100
라. 범위반자 처리방법	107
마. 배우자 등에 대한 사증발급 등(가족결합)	107
바. 난민인정 취소된 자의 체류	112
사. 난민인정 철회된 자의 체류	113

1. 체류관리 및 사범심사 일반원칙

가. 체류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불법체류기간 등 계산

※ 난민신청, 난민인정 결정 또는 인도적체류허가 결정 시 해당 체류자격으로 변경하도록 안내

나. (각종 체류허가 등 수수료)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 체류외국인과 동일하게 징수

○ 체류자격 부여

- 면제대상 : 난민신청자 등의 국내출생자녀
- 서류 : 국내병원 발급 출생증명서 등 국내출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체류기간연장 및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 면제대상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수급자
- ▶ 취업을 하기 어려운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사람 및 그 배우자
- ▶ 임산부, 9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및 그 배우자
- ▶ 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
- ▶ 난민법 제40조에 따른 생계비를 지급받고 있는 사람
- ▶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입주자

- 서류 : 진단서 등 각 대상별 관련사실 증명에 필요한 서류

○ 상기 면제대상 외에도 수수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본부에 승인 상신하여 면제

다. (위변조여권 및 밀입국 등) 위·변조 여권 행사, 밀입국 또는 국내 출생 등으로 여권이 없는 경우에는 위변조 여권 입수 경위, 밀입국 경위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기재한 사유서 징구

※ 난민신청 또는 최초 체류허가 시 사유서를 징구한 경우에는 그 이후 체류관리 과정에서는 사유서 제출 생략

라. 입국금지자 체류허가 시 조치 사항

1) (난민신청자) 최초 체류자격부여·변경·연장 시 본부(난민정책과) 승인 받아 체류허가, 본부 승인 받은 이후 체류허가는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권한으로 결정

※ 형사범으로 입국금지된 경우는 매 체류허가마다 본부 승인받아 체류허가

2) (인도적체류자·난민인정자 및 그 가족) 최초 체류허가 시 「입국규제 업무처리 등에 관한 지침」상의 입국금지 특별해제 절차에 따라 본부(출입국심사과, 난민정책과)에 입국금지 특별해제 승인 상신, 입국금지 특별해제 후 체류허가

※ 입국금지 특별해제 대상 중 [인도적 사유에 해당하는 자]의 '기타 이에 준하는 인도적 사유가 인정되는 자'에 해당

마. 신원불분명 난민에 대한 기록관리(관련문서: 이민정보과-3013/17.7.14)

1) 공적 증명서류가 있는 경우

가) 적용대상 : 난민신청자, 인도적체류자, 난민인정자

나) 업무처리 절차

○ 체류업무담당자

①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접수·처리

⇒ 공적증명서(여권 또는 여행증명서 등)를 근거로 등록사항 변경 처리

⇒ 생년월일 또는 성별 변경 시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재부여하고 성명만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 외국인등록번호 유지

※ 외국인등록번호 재부여 시에는 인적사항 변경 관련 내용을 참고사항에 반드시 입력하여 관리(변경이력 확인 시 필요)

⇒ 난민인정증명서 및 난민여행증명서(발급받은 자에 한함) 재발급 신청 안내

※ 등록사항변경신고 시 제출한 서류는 추후 사실관계 확인 시 중요한 근거가 되므로 반드시 이미지화하여 해당 등록정보에 저장

②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등 후속절차 진행

③ 난민업무담당자(사무소)에게 난민신청 및 난민인정 기록 정정 요청(공문으로 시행)

※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요청하고 추후 공문시행 가능

○ 난민업무담당자

① 체류담당 부서에서 발송한 기록정정 요청 공문에 따라 난민신청 및 난민인정 기록 정정

② 변경된 인적사항으로 난민인정증명서 등 재발급

※ 난민여행증명서 소지자의 경우 재발급 신청에 따라 재발급

2) 출생증명서*, 졸업증명서 등 공적증명서는 아니지만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

*출생증명서 발급기관이 국가기관이면 '1) 공적증명서류가 있는 경우'에 준하여 처리

가) 적용대상 : 난민인정자

나) 업무처리 절차

○ 난민업무담당자

① 난민인정증명서 인적사항 변경 신청 접수

② 본인인 제출한 서류, 진술 및 정황조사 등을 통해 실제 인적사항 확인

③ 난민신청 및 난민인정 관련 기록 수정

④ 변경된 인적사항으로 난민인정증명서 등 재발급

※ 대상자에게 14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사항 변경 신고를 할 것을 안내

○ 체류업무담당자

①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접수·처리

⇒ 변경된 인적사항으로 발급된 난민인정증명서를 제출받아 등록사항 변경 처리

②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등 후속절차 진행

3) 본인 진술 이외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

가) 적용대상 : 난민인정자

나) 업무처리 절차

○ 난민업무담당자

- ① 난민인정증명서 인적사항 변경 신청 접수
- ② 면접 및 사실조사 등을 통해 인적사항 변경 가부 결정
- ③ 인적사항을 변경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난민신청 및 난민인정 관련 기록 수정
- ④ 변경된 인적사항으로 난민인정증명서 등 재발급
 - ※ 대상자에게 14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사항 변경 신고를 할 것을 안내
 - ※ 인적사항을 변경을 불허하기로 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사유 등 설명 후 종료

○ 체류업무담당자

- ①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접수·처리
 - ⇒ 변경된 인적사항으로 발급된 난민인정증명서를 제출받아 등록사항 변경 처리
- ②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등 후속절차 진행

바. 다른 법률의 적용

- 출입국심사, 체류관리, 사범심사 등과 관련하여 동 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출입국관리법령 및 관련 지침에 따름
 - 각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권한이 있는 사항의 경우 인도적 사유의 유무 등 개별 판단*을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
- * (예) 질환·자녀부양 등 인도적 사유, 체재 중 국가정황 변동 등

2. 난민신청자 체류관리 및 사범심사

가. 체류자격 부여·연장·변경 등

1) 체류자격 부여(→ 세분류 코드 G-1-5)

가) 대상

- 난민신청자로 국내 출생자 · 밀입국자 등 출입국관리법 제23조 해당자

나) 조치사항 등

- 기타(G-1-5, 1년 이내) 자격 부여

- 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족의 체류기간 동일하게 부여

○ 제출 서류

- 신청서(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
- 여권, 반명함판 천연색 사진(3.5cm X 4.5cm) 1장
 - ※ 사진의 규격 등은 체류관리 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름
- 난민인정신청 접수증(난민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 가족관계 입증서류(난민신청 시 제출한 가족관계 입증서류로 같음 가능)
 - ※ 가족결합 사유 난민신청자에 한함
- 체류지 입증 서류
 - ☞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 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교회·난민지원시설·인권단체·UNHCR 등의 주거확인서 등
- 결핵검진확인서(결핵 고위험 19개 국가* 국민)
 - * ① 네팔 ② 동티모르 ③ 러시아 ④ 말레이시아 ⑤ 몽골 ⑥ 미얀마 ⑦ 방글라데시 ⑧ 베트남 ⑨ 스리랑카 ⑩ 우즈베키스탄 ⑪ 인도 ⑫ 인도네시아 ⑬ 중국 ⑭ 캄보디아 ⑮ 키르기스스탄 ⑯ 태국 ⑰ 파키스탄 ⑱ 필리핀 ⑲ 라오스
 - ※ 「외국인 결핵 환자에 대한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에서 정한 결핵검진 확인서(진단서), 난민신청 시 결핵 포함된 건강진단서 제출한 경우 사본 첨부
 - ※ 난민신청 시 건강진단서 제출하지 않은 자는 자격변경 신청 시 건강진단서 제출 가능

다) 체류허가 및 사범심사의 특례

○ 난민신청자의 미성년 자녀가 난민신청(가족결합) 후 체류허가 신청한 경우

① 국내출생자(출생 후 90일 이내)

- (주신청자 : 합법 등록외국인) 체류허가(G-1-5, 1년 이내)
 - ※ 주신청자의 체류기간을 참고하여 체류기간 등 부여
- (주신청자 : 기한유예 또는 불법체류 중) 체류허가(G-1-5, 6월 이내)
 - ※ 주신청자의 체류기간을 참고하여 체류기간 등 부여

② 국내출생자(출생 후 91일 이후)

- (17세 미만¹⁾)이고 주신청자가 합법 등록외국인) 허가신청 등 의무자(출입국관리법 제79조) 과태료 처분 후 주신청자의 체류기간을 참고하여 체류자격(G-1-5, 1년 이내) 부여
- (17세 이상 19세 미만) 본 지침“난민신청 당시 불법체류자”처리방법 준용(단, 보호 관련 사항은 출입국관리법령 및 해당 지침에 따라 처리)

※ 주신청자의 체류기간을 참고하여 체류기간 등 부여

③ 국내출생자가 아닌 경우 : 일반적인 체류관리 기준에 따라 처리

○ 난민신청자의 국내출생 미성년 자녀가 난민신청을 하지 않고 체류허가 신청하는 경우

① (17세 미만이고 주신청자가 합법 등록외국인) 주신청자의 체류기간까지 체류허가(G-1-99 부여 등)

※ 단, 자녀가 출생한 날부터 90일 도과 불법체류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79조에 따라 허가신청 등 의무자 처벌 후 체류허가

동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출입국관리법령 및 해당 지침에 따라 처리

② (17세 이상 19세 미만) 일반적인 체류관리 기준에 따라 처리

○ 특정기간 내 특정언어 면접자 대상 특례

- 대상 : '15.9.1. ~ '18.6.30. 기간 내 아랍어로 면접을 본 이후 난민재신청하여 그 신청절차가 아직 종료되지 않았거나, 아직 재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 난민면접일을 기준으로 판단 (심사결정일이 아님), 난민면접을 2회 이상 본 경우에는 1번이라도 면접일이 기간 내면 해당됨
- ▶ 재신청 후 심사대기 중이거나, 이의신청/소송이 진행 중인 자도 포함됨
 - 이미 재신청에 대한 심사가 완료되고 이의신청·소송 등 제소기간이 도과 하였거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는 대상이 아님
- ▶ 난민신청 횟수가 아닌 직전 난민신청일의 면접일을 기준으로 판단

1) 출입국관리법은 79조(허가신청 등의 의무자)의 연령(17세 미만) 규정 준용

- 조치 : 현 체류상황을 불문하고 체류자격 부여

※ '20.4.10. 난민정책과 업무연락 '특정 난민재신청자 업무처리 관련 지시' 참고

2) 체류자격 변경허가(→ 세분류 코드 G-1-5)

가) 대상

○ 난민신청자로 출입국관리법 제24조 해당자

나) 조치사항 등

○ 기타(G-1-5, 6개월 내지 1년) 자격 변경

○ 제출 서류

- 신청서(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소지자에 한함)

- 반명함판 천연색 사진(3.5cm X 4.5cm) 1장

※ 사진의 규격 등은 체류관리 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름

- 난민인정신청 접수증(난민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 가족관계 입증서류

※ 가족결합 사유 난민신청자에 한하며, 난민신청 시 제출한 가족관계 입증서류로 갈음 가능

- 체류지 입증 서류

☞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 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교회·난민지원시설·인권단체·UNHCR 등의 주거확인서 등

- 결핵검진확인서(결핵 고위험 19개 국가 국민, 결핵지침 시행 후 최초 체류허가 신청인 경우)

※ 「외국인 결핵 환자에 대한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에서 정한 결핵검진

확인서(진단서), 난민신청 시 결핵 포함된 건강진단서 제출한 경우 사본 첨부

※ 난민신청 시 건강진단서 제출하지 않은 자는 자격변경 신청 시 건강진단서 제출 가능

다) 체류허가의 특례

○ 기존 체류자격을 유지한 상태에서 난민인정절차 희망자

- 난민인정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기존 체류자격 유지 요건을 충족하고
신청자 본인이 원하는 경우 기존 체류자격(D-2, D-8 등) 유지 가능

※ 다만, 체류자격 성질 상 난민신청 지위를 가질 수 없는 체류자격(A계열)
소지자는 기타(G-1-5)자격으로 변경 조치

○ 특정기간 내 특정언어 면접자 대상 특례

- 대상 : '15.9.1. ~ '18.6.30. 기간 내 아랍어로 면접을 본 이후
난민재신청하여 그 신청절차가 아직 종료되지 않았거나, 아직
재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 난민면접일을 기준으로 판단 (심사결정일이 아님), 난민면접을 2회 이상
본 경우에는 1번이라도 면접일이 기간 내면 해당됨
- ▶ 재신청 후 심사대기 중이거나, 이의신청/소송이 진행 중인 자도 포함됨
 - 이미 재신청에 대한 심사가 완료되고 이의신청·소송 등 제소기간이 도과
하였거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는 대상이 아님
- ▶ 난민신청 횟수가 아닌 직전 난민신청일의 면접일을 기준으로 판단

- 조치 : 현 체류상황을 불문하고 체류자격 변경허가

※ '20.4.10. 난민정책과 업무연락 '특정 난민재신청자 업무처리 관련 지시' 참고

3) 체류기간 연장 허가(→ 세분류 코드 G-1-5)

가) 대상

○ 난민신청자(G-1-5)로 난민인정절차 (소송 포함) 진행 중인 자

-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

- 이의신청의 제기기간*이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 이의신청 제기기간 :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기간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나) 조치사항 등

○ (허가기간) 6개월 내지 1년(원칙)

※ 단, 소송 등 수행 예정기간, 기타 인도적인 사유 등을 고려하여 청장 등이 법정기한(1년) 내에서 탄력적으로 허가기간 부여 가능

○ 제출 서류

- 신청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소지자에 한함)

- 체류지 입증 서류

☞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 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교회·난민지원시설·인권단체·UNHCR 등의 주거확인서 등

-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소송제기 관련 증명서류

※ 소송제기 후 최초 연장의 경우 '소접수증명원' 또는 '소계속증명원', 이후 연장 시에는 '소계속증명원'을 제출받아 소송이 계속 진행 중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체류기간 연장

- 결핵검사서(결핵 고위험 19개 국가 국민으로 지침 시행 후 최초 연장인 경우)

※ 발급기관 등에 관한 사항은 G-1(난민신청자) 자격변경 시와 동일

다) 체류기간 연장의 특례

○ 특정기간 내 특정언어 면접자 대상 특례

- 대상 : '15.9.1. ~ '18.6.30. 기간 내 아랍어로 면접을 본 이후 난민재신청하여 그 신청절차가 아직 종료되지 않았거나, 아직 재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 난민면접일을 기준으로 판단 (심사결정일이 아님), 난민면접을 2회 이상 본 경우에는 1번이라도 면접일이 기간 내면 해당됨
- ▶ 재신청 후 심사대기 중이거나, 이의신청/소송이 진행 중인 자도 포함됨

- 이미 재신청에 대한 심사가 완료되고 이의신청·소송 등 제소기간이 도과하였거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는 대상이 아님
- ▶ 난민신청 횟수가 아닌 직전 난민신청일의 면접일을 기준으로 판단

- 조치 : 현 체류상황을 불문하고 체류자격 변경허가

※ '20.4.10. 난민정책과 업무연락 '특정 난민재신청자 업무처리 관련 지시' 참고

나. 난민신청자 취업허가

1) 취업허가 대상

○ 난민법 상 난민신청자로 난민신청 후 6개월 경과자 원칙

※ 입증자료 제출 지연, 소재 불명, 보호 등 신청자 귀책사유로 인한 기간은 6개월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 다만, 난민신청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았으나 청장 등이 특히 인도적인 배려(임산부, 장애인 등 부양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취업허가 가능

2) 허가기준 등

○ (취업 허용 업종) 아래“취업제한 업종”을 제외한 단순노무 업무

【취업제한 업종】

- 건설업(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건설업만 기재되어 있으면 취업 불가, 건설업·제조업 등 복합 업종인 경우 건설업 취업불가 조건으로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스티커 하단에 “건설업 취업 불가” 날인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행행위 영업장소에 취업하는 행위
-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제8호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에서 유흥접객원으로 근무하는 행위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풍속영업 중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업장소 등에 취업하는 행위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과의 교습 행위
- 기타 난민신청자의 신분을 벗어난 활동 및 기타 법무부장관이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분야

○ (허가 절차) 출입국관리법 제20조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절차 준용

※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스티커 하단에 “건설업 취업 불가” 날인

- 난민신청자가 그 신분을 유지하는 동안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체류자격외 취업활동 허가

○ (유의 사항) 취업허가는 사전 허가 사항임

- 난민신청자가 외국어회화강사(E-2) 등 전문분야에 취업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반체류외국인과 동일한 서류 등 징구 및 절차 등 진행
- 근무처(고용주)가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필요
- 고용주와 사용자가 동일하여야 하며 취업알선 업체, 인력파견 업체 등에 소속되어 일당제 또는 파견제 형식의 취업 불가
- 외국인 불법고용주 등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등 제한기준 (체류관리과-5468, 2017. 9. 13.) 적용

○ 제출 서류

- 신청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소지자에 한함)
- 고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 사업장 관련 서류

※ 난민신청자가 외국어회화강사(E-2) 등 전문분야에 취업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반체류외국인과 동일한 서류 등 징구 및 절차 등 진행

다. 범위반 등 난민신청자 체류허가 및 사범처리 기준 등

1) 난민신청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변경·연장 등 제한자 처리기준

(→ [붙임 27 도식] 참조)

가) 기본원칙

- 청장 등은 난민신청자의 체류실태, 과거 범법사실, 범위반 경위, 인도적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완화하여 심사결정 가능
- 난민신청 시 체류기간 만료일이 임박하여 체류허가 등 신청 시 기간 도과될 우려가 있는 경우 기관 사정에 따라 체류허가 신청

(가)접수 등 사안별 조치

- 방문예약제 개선안 알림(체류관리과-2312, 2019.04.05.)을 참고하여 업무 처리

※ 부득이한 사유(사고, 질병치료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로 체류허가 등 신청 시 체류기간 초과상태가 된 경우 난민신청일 기준으로 완화하여 처리 가능

나) 난민신청 당시 합법체류자

○ 적용대상

- 대한민국에서 1년 이상 체류자로 체류기간 만료일 임박(4개월 이내)자, 난민재신청자, 출국을 위한 기간연장을 받은 자, 체류기간 연장 등 불허결정을 받은 자, 출국권고 또는 출국명령을 받은 자가 난민신청을 하는 경우

○ 사안별 조치사항

① 체류기간 연장 등 불허 결정 통지 후 출국기한 유예 대상

- 대한민국에서 1년 이상 체류자로 체류기간 만료일 임박(4개월 이내)자, 재신청자,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자가 난민신청을 하는 경우

※ 사무소 재방문에 따른 민원혼잡도 등을 고려하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3조(체류기간연장 등 불허결정 통지, 14이내 출국기한 명시) 및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 출국기한유예(3개월 이내) 절차 동시 진행

② (원처분에 따른) 출국기한 유예 대상

- 체류기간 연장 등 불허결정을 받은 자, 출국권고 또는 출국명령을 받은 자

출국기한 유예 처분 권한 기관 : 최초 처분청이 아니더라도 체류지 변경사실이 확인되면 변경된 체류지 관할청 등에서 출국기한 유예

【처리 예시】

- 난민신청자가 A청에서 출국기한 유예처분 받고 B청 관할로 체류지가 변경된 경우, B청의 사범(체류)담당자는 출국기한 유예 조치(3개월)하고, 변경된 주소지 서류를 ICRM에 스캔하고 - 「난민」-「참고사항」에 별도 기재
 - 제목 : 출국기한 유예자 체류지 변경
 - 참고사항/사유 : 변경된 주소지 기재

다) 난민신청 당시 불법체류자

○ 통고처분(범칙금) 면제 후 출국명령 대상

- 자진출석 후 최초로 난민신청한 자로 난민신청 후 체류허가 등 신청일 기준 불법체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 (자진출석, 최초 난민신청 한 자로) 합법체류 중 난민신청 하였으나 체류허가 등 신청 시 불법체류기간 30일 이내인 경우도 위에 준하여 처리

○ 통고처분(범칙금 부과) 후 출국명령 대상

- 자진출석 후 최초로 난민신청한 자로 난민신청 후 체류허가 등 신청일 기준 불법체류 기간이 31일 이상인 경우

※ (자진출석, 최초 난민신청 한 자로) 합법체류 중 난민신청 또는 불법체류 기간 30일 이내 난민신청 하였으나 체류허가 등 신청 시 불법체류기간 31일 이상인 경우도 위에 준하여 처리

○ 보호조치 대상

- 불법체류 중 단속에 적발된 후 난민신청한 경우
- 출국명령을 받은 자가 불법체류 중 난민신청한 경우
- 불법체류 중 자진출석 후 난민재신청 하는 경우
- 그 외 출입국관리법 제51조에서 정한 보호 요건을 충족한 경우
- (특례) 청장 등은 용의자의 체류실태, 과거 범법사실, 범위반 경위, 인도적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완화하여 심사결정 가능

2) 난민심사 진행 중 체류기간 도과자 처리 기준

○ 기본원칙

- 난민신청 후 기타(G-1-5) 자격 등으로 체류하던 자로 난민심사 진행 중이고 체류기간 도과된 경우 하단의 기준에 따라 조치

○ 통고처분(범칙금 부과) 후 체류허가 대상

- 불법체류기간에 따라 통고처분 후 체류허가
 - ※ 소송 등 수행 예정기간, 기타 심사진행 정도 등을 고려하여 체류기간 연장

○ 통고처분(범칙금 부과) 후 출국명령 대상

- 체류기간 연장 등 불허 후 출국기한 유예를 받은 사람이 출국기한 도과 후 30일 이내인 경우
 - ※ 난민인정 절차 종료 시까지 3개월 이내에서 출국기한 유예

○ 보호명령 대상

- 출석요구서가 발부된 사람으로, 1년 이상 불법체류 후 자진출석한 경우
- 기타(G-1-5)자격 체류기간 도과 후 단속에 적발된 경우
- 출국기한 유예를 받은 사람이 출국기한 도과 후 31일 이상인 경우
(다만, 단속에 적발된 경우는 도과기간에 상관없이 보호조치)
- 출국명령을 받은 자가 불법체류 중 자진출석 또는 단속에 적발된 경우
- 그 외 출입국관리법 제51조에서 정한 보호 요건을 충족한 경우
 - ※ 다만, 난민인정 심사 종료 시까지 강제퇴거명령 집행 유예

3) 위·변조 여권(사증·심사인 위변조 포함) 행사자 및 밀입국자 조치사항

4) 밀입국자에 대한 체류허가 및 사범심사

5) 난민신청자 불법취업자 처리방안 (취업허용 업종에 불법취업 한 경우)

가) 난민인정 신청일 이후 6개월 이내 취업한 경우(단속 포함)

-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외국인고용의 제한) 위반으로 통고처분
- 통고처분 불이행시 고발 조치

나) 난민인정 신청일 이후 6개월 경과 후 취업허가 없이 취업한 경우(단속 포함)

- 출입국관리법 제20조(체류자격외 활동) 위반으로 통고처분
- 통고처분 불이행시 고발 조치

다) 출국명령 또는 출국유예를 받은 자가 기한 내 취업 중 단속

-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외국인고용의 제한) 위반으로 통고처분
- 통고처분 불이행시 고발 조치

라) 체류기간 또는 출국유예기간 도과 후(불법체류 중) 취업 중 단속

- 원칙적으로 출입국관리법 제51조에 따라 보호조치 후 난민심사 진행

마) 범칙금 감면

- 난민신청 사유, 범칙금 부담 능력, 불법취업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범칙금 감면 여부 결정

※ 단, 난민신청자가 취업제한 업종에 불법취업 하는 경우에는 일반 체류외국인에 준하여 사범처리

6) 벌금형 확정자 처리방안

가) 기본원칙

- 벌금형이 확정된 난민신청자는 「벌금형 확정 외국인 심사결정 기준안(이민조사과-4072, '14. 8. 28.)」에 따라 처리

- 다만, 출국조치 대상은 난민인정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강제퇴거 집행 보류

나) 난민인정 절차 종료 전 강제퇴거 집행

- 연령, 범죄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 정황(피해 정도와 합의 여부), 범죄 경력,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한민국의 공공의 안전을 해쳤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강제퇴거 집행

※ 난민신청자에 대한 강제퇴거 집행 사전보고 간소화 지시(이민조사과-1634, '19. 3. 19.) 참조

- 법적 근거 : 출입국관리법 제62조 제4항(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

7) 국내 입국 전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행위자 처리방법

☞ 관련 문서 : 난민과-13572(2018. 10. 19.), 난민업무 처리 관련 지시

가) 적용대상

-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살인, 성폭행, 무장 강도, 마약거래, 마약투약 등)를 저지른 난민신청자(면접과정에서 진술한 경우 포함)

나) 조치사항

- 강제퇴거 명령(보호조치) 및 퇴거 집행
 - ※ (적용법조)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 같은 법 제46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제62조 제4항
- 강제퇴거 명령에 대해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소송이 인용된 경우에는 본안 소송 확정시까지 퇴거 집행 보류

다) 업무처리 절차

- 체류 · 사범 · 보호 담당자 조치사항
 - (체류업무 담당) ICRM(참고사항 등) 조회 결과, 난민인정 제한(배제) 강제퇴거 대상자를 발견하면 사범업무 담당부서로 인계
 - (사범 · 보호업무 담당) 난민인정 제한(배제) 강제퇴거 대상자를 강제퇴거 명령(보호조치) 하는 경우 또는 퇴거 집행 이전, 지체 없이 본부(난민정책 과, 이민조사과) 서무 담당자에게 대상자(인적사항 등) 메모 보고

※ 난민신청자에 대한 강제퇴거 집행 사전보고 간소화 지시(이민조사과 -1634, '19. 3. 19.) 참조

○ 출입국항 조치사항

- 난민인정 제한(배제) 대상자가 출국하였다가 입국할 경우 입국불허 조치
- 난민인정 제한(배제) 대상자가 자진 출국할 경우 사범심사 결정(출국명령) 후 출국 조치

※ 출입국항에서 입국불허 또는 출국명령 조치 하는 경우 지체 없이 본부(난민정책과) 서무 담당자에게 대장자(인적사항 등) 메모 보고

○ 기타 사항

- ICRM 참고사항에 입력되지 않았으나 업무처리과정에서 난민인정의 제한(배제)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본부(난민정책과)에 보고하고 본부 지시에 따를 것

8) 신원확인 등 난민신청자의 보호 및 해제절차

가) 신원확인을 위한 보호

○ 대상

- 난민신청자가 난민 인정을 받을 목적으로 신원을 은폐하여 여권 등 신분증을 고의로 파괴하거나 거짓의 신분증을 행사한 자
- 난민법상 신원확인의 대상은 난민신청자이므로, 출입국항 신청자 중에서 회부여부를 심사 중인 사람은 신원확인을 위한 보호대상이 아님
- ※ 다만, 난민심사에 회부하기로 결정하여 조건부 입국허가한 난민신청자에 대하여 신원확인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 가능

○ 신원확인을 위한 보호 절차

- 출입국관리법 제51조에 따라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아 보호

○ 신원확인을 위한 보호의 연장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원확인이 지체되는 경우 10일 범위에서 청장 등으로부터 보호기간 연장허가서를 발급받아 보호기간 연장

○ 신원확인을 위한 보호의 해제

- 난민신청자의 신원이 확인되거나, 10일 이내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보호를 해제 하여야 함

○ 보호 관련 규정의 준용

- 신원확인을 위한 보호에 관하여 난민법, 난민법 시행령, 난민법 시행규칙 및 동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출입국관리법령 및 해당 지침에 따라 처리

○ 행정사항

- 난민신청자에 대하여 신원확인을 위해 보호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

나) 보호의 일시해제

○ 대상

- 보호 중인 난민신청자가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소송에서 승소(1심 또는 2심)한 경우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 유지, 공공복리, 기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는 제외

- 기타 「보호일시해제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보호 일시해제가 불가피 한 경우

○ 보호 일시해제 절차

- 보호 일시해제를 하는 경우 보증금 부담능력이 없는 자는 난민신청자 신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증금 감액 또는 신원보증인의 보증으로 보호 일시해제

- 보호 일시해제의 절차는 출입국관리법령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9) 난민소송 제기자 등 조치사항

가) 난민소송 제기자

○ 난민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 조치

○ 다만, 소송 제기자가 '사정변경 없는 재신청자 등' 유형에 해당하면 아래 '소송 남용자에 대한 조치사항' 준용

나) 국가승소 확정자

- 체류기간 연장 불허, 불허결정 통지서에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 출국기한 명시

다) 소송 남용자에 대한 조치사항

- (소송 남용 사례) 추후보완 항소(상고)장 또는 (재)항고장 제출한 경우, 소송종료 후 같은 처분에 대해 반복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 난민불인정처분 1건에 대해 반복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임

- 체류기간연장 불허 후 소송절차 종료 시까지 30일 범위 내에서 출국기한 유예
- 출국기한 유예 중인 경우 소송절차 종료 시까지 30일 범위 내에서 출국기한 유예
- 이미 소송종결에 따른 출국명령을 받은 경우 소송절차 종료 시까지 30일 범위 내에서 출국기한 유예

10) 체류허가 및 사범처리의 특례

가) 인도적 사유 등 개별 참작사유가 있는 경우

- 불법체류, 불법취업 등 범위반 사실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부 승인 상신하여 처리

※ 지침 3쪽 및 71쪽의 일반원칙 참조(동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출입국관리법령 및 관련지침에 따름)

나) 특정기간 내 특정언어 면접자 대상 특례

- 대상 : '15.9.1. ~ '18.6.30. 기간 내 아랍어로 면접을 본 이후 난민재신청하여 그 신청절차가 아직 종료되지 않았거나, 아직 재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 난민면접일을 기준으로 판단 (심사결정일이 아님), 난민면접을 2회 이상 본 경우에는 1번이라도 면접일이 기간 내면 해당됨
- ▶ 재신청 후 심사대기 중이거나, 이의신청/소송이 진행 중인 자도 포함됨
 - 이미 재신청에 대한 심사가 완료되고 이의신청·소송 등 제소기간이 도과하였거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는 대상이 아님
- ▶ 난민신청 횟수가 아닌 직전 난민신청일의 면접일을 기준으로 판단

- 조치 : 불법체류 또는 불법취업한 경우 범 위반기간에 관계없이

통고처분 면제 후 체류허가

- 통고처분 면제는 최초 1회에 한하며, 향후 범질서 위반 시 특례 미적용
 - 단속에 적발된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
 - 일반 형사범 등 기타 범 위반자, 보호 중 신청자도 해당사항 없음
- ※ '20.4.10. 난민정책과 업무연락 '특정 난민재신청자 업무처리 관련 지시' 참고

3. 인도적체류자 체류관리

가. 체류자격 부여·연장·변경 등

1) 체류자격부여(→ 세분류 코드 G-1-6)

가) 대상

-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았으나 난민법 제2조 3호(인도적체류자)에 해당하는 자
- 출국기한 유예를 받은 자, 보호 중인 자, 밀입국자 등 출입국관리법 제23조 적용 대상자

나) 조치사항 등

- 인도적체류자(G-1-6, 1년 이내) 자격 부여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족의 체류기간 동일하게 부여
- 제출 서류
- 신청서(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
- 여권, 반명함판 천연색 사진(3.5cm X 4.5cm) 1장
- ※ 사진의 규격 등은 체류관리 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름
-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난민법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 체류지 입증 서류
- ☞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 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교회·난민지원시설·인권단체·UNHCR 등의 주거확인서 등

- 결핵검진확인서(결핵 고위험 19개 국가 국민, 결핵지침 시행 후 최초 체류허가 신청인 경우)

※ 「외국인 결핵 환자에 대한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에서 정한 결핵검진 확인서(진단서)

○ 인도적체류자 취업허가 안내문 교부(붙임 19)

- 인도적체류허가 시 안내문을 이미 교부 받은 경우는 생략 가능

2) 체류자격 변경허가(→ 세분류 코드 G-1-6)

가) 대상

○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았으나 난민법 제2조 3호(인도적체류자)에 해당하는 자

- 체류자격 정정이 필요하거나 출입국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체류자격 변경이 필요한 경우

나) 조치 사항 등

○ 난민신청자(G-1-5) 자격 소지자 : 체류자격 정정(세분류 코드 정정(G-1-6) 후 체류기간 연장(1년 이내))

- 기타(G-1) 체류자격으로 체류 중인 난민신청자가 체류자격의 변동 없이 세분류 코드만 인도적체류자(G-1-6)로 변경되는 경우에도 시스템 상에는 체류신청 및 허가사항란에는 “자격변경”란으로 설정하여 입력할 것(정정 후 체류기간 연장 조치한 경우 연장 수수료 부과)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족의 체류기간 동일하게 부여

○ 난민신청자(G-1-5) 자격 외 체류자격 소지자 : 출입국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체류자격 변경 조치

- 다른 체류자격으로 체류 중인 자가 기존 체류자격을 계속하여 유지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체류자격 변경 불요

○ 제출 서류

- 신청서(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반명함판 천연색 사진(3.5cm X 4.5cm) 1장(등록증 재발급 시)
 - ※ 사진의 규격 등은 체류관리 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름
- 체류지 입증 서류
 - ☞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 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교회·난민지원시설·인권단체·UNHCR 등의 주거확인서 등
- 결핵검진확인서(결핵 고위험 19개 국가 국민, 결핵지침 시행 후 최초 체류허가 신청일 경우)
 - ※ 「외국인 결핵 환자에 대한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에서 정한 결핵검진 확인서(진단서)
- 인도적체류자 취업 허가 안내문 교부(붙임 19)
 - 인도적체류허가 시 안내문을 이미 교부 받은 경우는 생략 가능

3) 체류기간 연장허가(▶ 세분류 코드 G-1-6)

가) 대상 : 인도적체류자(G-1-6)자격 소지자로 아래 해당자

- 국내 체류를 허가한 인도적 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

나) 조치사항 등

- (허가기간) 1년 이내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족의 체류기간 동일하게 부여
- 인도적체류자 취업허가 안내문 교부(붙임 19)
 - 동 개정지침 시행이전 인도적 체류허가 받고 국내 체류 중인 자를 포함하여 변경된 양식의 인도적체류자 취업허가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체류기간 연장 시 교부
- 제출 서류
 - 신청서(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체류지 입증 서류

☞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 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교회·난민지원시설·인권단체·UNHCR 등의 주거확인서 등

4) 체류지 변경신고 및 재입국허가

○ 난민신청자 체류지 변경신고 및 재입국허가 준용

나. 인도적체류자 취업허가

1) 기본원칙

○ 통상적인 단순노무 등 활동에 한정하되 전문직은 해당 법령에 따른 요건 충족 시 취업 가능

※ 국내법에 따라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직종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2) 허가 기준 등

○ (허가 기간)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최대 1년(계속 연장 가능)

○ (취업허용 업종) 아래 '취업제한 업종'을 제외한 단순노무

【취업제한 업종】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행행위 영업장소에 취업하는 행위
-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제8호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에서 유흥접객원으로 근무하는 행위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풍속영업 중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업장소 등에 취업하는 행위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과외 교습 행위
- 기타 난민신청자의 신분을 벗어난 활동 및 기타 법무부장관이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분야

○ (조치사항) 출입국관리법 제20조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절차 준용

-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내용과 허가기간 명시

- 건설업 취업의 경우,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사항 입력 시 비고란에 “인도적체류자” 입력 및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서 교부
- ※ 건설업 취업 시 사전이수 의무사항인 “외국인노동자 건설업 기초안전 보건교육” 신청 시 대상자의 체류자격 확인을 위해 필요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체류자격외 활동허가서 발급

○ (유의 사항) 취업허가는 사전 허가 사항임

- 인도적체류자가 외국어회화강사(E-2) 등 전문분야에 취업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반체류외국인과 동일한 서류 등 징구 및 절차 등 진행
- 근무처(고용주)가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필요
- 고용주와 사용자가 동일하여야 하며 취업알선 업체, 인력파견 업체 등에 소속되어 일당제 또는 파견제 형식의 취업 불가
- 외국인 불법고용주 등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등 제한기준 (체류관리과-5468, 2017. 9. 13.) 적용

○ 제출서류

- 신청서(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고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 사업장 관련 서류

다. 인도적체류자 가족결합(→ 세분류 코드 G-1-12)

1) 기본원칙

- 인도적체류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가 인도적체류자와 함께 국내에 체류하고자 체류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를 제출받아 기타(G-1-12, 인도적체류자 가족결합) 자격 부여

※ 인도적체류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가 독자적인 난민신청 사유 없이 오로지 가족결합을 목적으로 난민신청하는 경우 난민신청 접수 없이 체류허가 신청 안내

-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 중인 인도적체류자의 가족에 대한 가족결합을 인정하되,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에 대한 사증발급은 불인정

- 인도적체류자의 가족 등이 난민인정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인도적체류자와 가족결합 체류 불허

2) 가족의 범위

- (배우자) 인도적체류자가 국내 체류 중 혼인으로 인한 새로운 신분관계 형성 시 혼인의 구체적 경위 및 진정성 등을 판단
 - ※ 인도적체류자가 본국의 배우자 외에 국내에서 새로운 배우자와 혼인(중혼)한 경우에는 국내 「민법」에 따라 배제
- (자녀) 미성년 자녀(국내 출생 자녀 포함)에 한정, 미성년 자녀가 혼인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
- (부모, 형제자매) 원칙적으로 제외, 다만 부모의 경우 국내에 동반 입국하여 함께 난민신청 시 신병치료, 자녀양육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에 포함(개별적으로 입국한 경우는 제외)

3) 체류자격 부여·변경 허가

가. 부부 및 친생자 관계 등 가족관계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실태조사 등을 거쳐 가족관계의 진정성 확인 후 체류허가

나. 제출서류

- 신청서(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
- 여권
- 반명함판 천연색 사진(3.5cm X 4.5cm) 1장
 - ※ 사진의 규격 등은 체류관리 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름
- 가족관계 입증서류
 - ☞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 결혼증명서, 혼인신고 수리증명서 등 혼인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 (미성년 자녀) 출생증명서 등 부모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체류지 입증 서류

- ☞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 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교회·난민지원시설·인권단체·UNHCR 등의 주거확인서 등

○ 결핵검진확인서(결핵 고위험 19개 국가 국민)

- ※ 「외국인 결핵 환자에 대한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에서 정한 결핵검진 확인서(진단서)

4) 체류기간 연장 허가

○ 체류기간 연장 기간

- 매회 1년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 연장허가 가능
- 인도적체류자가 국내 체류하는 동안 체류기간 연장허가 가능

5) 취업허가

○ 인도적체류자에 대한 취업허가 절차 및 기준 준용

6) 불법체류 중 인도적체류자 가족결합(G-1-12) 신청자 처리방법

○ 불법체류기간 계산

- 체류허가 신청일 기준으로 불법체류기간 계산

○ 통고처분 면제(범칙금 면제) 대상

- 자진출석한 사람으로 국내 체류기간이 입국일로부터 1년 이내이고 불법체류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 통고처분(범칙금 부과) 대상

- 원칙적으로 상기 통고처분 면제 대상을 제외하고는 통고처분 후 체류허가

○ 동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법령 및 지침에 따름

라. 법 위반자 처리방법

1) 일반사항

- 체류자격 부여, 체류자격 변경허가 등을 위반한 자는 출입국관리법령 및 해당 지침에 따라 처리

2) 인도적체류자 불법취업자 처리방안

가) 일반원칙

- 인도적체류자가 취업제한 분야에 취업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령 및 해당 지침에 따라 처리(단, 건설업 취업자의 경우 적발 시 통고처분 후 체류허가), 취업제한 분야 이외 취업자는 아래 기준에 따라 처리

나) 인도적체류자가 취업허가 없이 취업한 경우(단속 포함)

- 출입국관리법 제20조(체류자격외 활동) 위반으로 통고처분 후 체류허가
- 통고처분 불이행시 고발 조치

마. 인도적 체류자 체류허가 취소 및 기간연장 등 불허

1) 체류허가 취소 또는 기간연장 등 불허 사유

- 거짓 서류의 제출로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경우
- 거짓 진술 또는 사실의 은폐로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경우
- 본국의 사정 변경으로 본국에 돌아갈 수 있게 된 경우
- 인도적 체류허가 이후에 난민인정의 제한, 취소 및 철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되거나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상응하는 법 위반 행위를 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기타 사정 변경으로 더 이상 인도적 체류를 허가할 필요가 없다고 법무부장관이 판단하는 경우

2) 절차

가) 체류허가 취소자 : 출입국관리법 제89조 따라 처리

- 출입국관리법 제68조에 따른 출국명령(발부일로부터 30일 범위 내 출국기한)

나) 체류기간 연장 등 불허결정자 :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33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결정통지서(발급일로부터 14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출국기한 명시)

4. 난민인정자 체류관리

가. 체류자격 부여·연장·변경 등

1) 체류자격 부여(→세분류 코드 F-2-4)

가) 대상 : 난민법 제2조 2호(난민인정자)에 해당하는 자

- 출국기한 유예를 받은 자, 보호 중인 자, 밀입국자 등 출입국관리법 제23조 해당자

※ 난민임시상륙허가를 받은 사람이 난민으로 인정된 후 입국을 허가 하는 경우에는 난민임시상륙허가서 회수

나) 조치사항 등

- 난민인정자(F-2-4, 3년) 자격 부여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족의 체류기간과 동일하게 부여

※ 보호 중 난민인정 받은 자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보호해제 후 체류자격 부여
→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2(난민에 대한 형의 면제)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을 받아 보호된 외국인의 형을 면제하는 경우에는 강제퇴거명령을 취소하고 보호를 해제하여야 함

다) 제출 서류

- 신청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
- 여권
- 난민인정증명서(난민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 반명함판 천연색 사진(3.5cm X 4.5cm) 1장
※ 사진의 규격 등은 체류관리 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름
- 체류지 입증 서류

- ☞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 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교회·난민지원시설·인권단체·UNHCR 등의 주거확인서 등
- 결핵검진확인서(결핵 고위험 19개 국가 국민, 결핵지침 시행 후 최초 체류허가 신청인 경우)
 - ※ 「외국인 결핵 환자에 대한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에서 정한 결핵검진 확인서(진단서)

2) 체류자격 변경허가(→세분류 코드 F-2-4)

가) 대상 : 난민법 제2조 2호(난민인정자)에 해당하는 자

- 출입국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체류자격 변경이 필요한 경우

나) 조치사항 등

- 난민인정자(F-2-4, 3년) 자격 변경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족의 체류기간과 동일하게 부여

다) 제출서류

- 신청서(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
- 여권
- 난민인정증명서(난민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 체류지 입증 서류
 - ☞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 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교회·난민지원시설·인권단체·UNHCR 등의 주거확인서 등
- 결핵검진확인서(결핵 고위험 19개 국가 국민, 결핵지침 시행 후 최초 체류허가 신청인 경우)
 - ※ 「외국인 결핵 환자에 대한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에서 정한 결핵검진 확인서(진단서)
- 반명함판 천연색 사진(3.5cm X 4.5cm) 1장
 - ※ 사진의 규격 등은 체류관리 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름

3) 체류기간 연장허가(→세분류 코드 F-2-4)

가) 대상 : 난민인정자(F-2-4)자격 소지자로 아래 해당자

- 국내 체류를 허가한 난민인정 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

나) 조치사항 등

- 난민인정자(F-2-4, 3년 범위 내) 자격으로 기간 연장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족의 체류기간 동일하게 부여

다) 제출서류

- 신청서(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체류지 입증 서류

☞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 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교회·난민지원시설·인권단체·UNHCR 등의 주거확인서 등

4) 체류지 변경신고

- 일반외국인 체류관리 절차 준용

5) 난민인정자의 취업활동

- 난민인정자는 거주(F-2)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음

나. 난민인정자 영주자격 변경(→세분류 코드 F-5-27)

1) 허가권자 : 법무부장관

- 난민인정자가 영주자격 변경을 신청하면 본부에 승인 상신

- 난민인정자로서 영주자격 변경 등 심사와 관련하여 동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출입국관리법령 및 해당 지침에 따름

2) 허가 요건(아래 ①~⑤ 모두 충족)

- ① 영주자격 신청일 기준으로 난민인정자(F-2-4) 자격으로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체류
 - ※ 완전 출국한 사실 없이 계속하여 체류 중이어야 하며, 재입국허가(면제 포함)를 받고 출국한 후 3개월 이내 재입국한 경우는 국내체류기간으로 인정
- ②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
- ③ 법령을 준수하는 등 품행이 단정할 것
- ④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 ※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한국은행이 고시하는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이상 또는 가계 자산이 중위수준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 ⑤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에 거주하는데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 ※ 출입국관리법 제39조에서 정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종합평가 합격

3) 제출서류

가) 공통서류

- 신청서(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
- 여권, 외국인등록증
 - ☞ 생명과 신체의 급박한 위협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한 경우, 국내출생 자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여권을 소지하지 못한 경우 또는 위·변조여권으로 입국한 경우에는 여권 생략(자격변경 및 자격부여 시 제출한 사유서 확인)
- 본국이 아닌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체류국 정부가 발행한 범죄경력증명서(본국 발행 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은 생략)

나) 기본소양(한국어 요건) 관련 서류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또는 종합평가 합격 증빙서류

다) 생계유지 능력 입증 서류

-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한국은행이 고시하는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이상 또는 가계 자산이 중위수준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4) 영주자격 변경 제한 대상

- 범칙금 및 벌금형을 받은 자는 「체류관리 제한 통합기준 (체류관리과 - 2626호, 2014.05.20.)」 적용
-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 기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 허위서류를 제출한 사람
- 해외범죄경력 확인에 따른 영주자격변경의 제한 대상자

5) 난민인정자로서 영주자격 상실자 등 처리 방법

- 강제퇴거가 결정되어 영주자격이 상실된 난민인정자의 경우 동 지침 강제송환의 금지(2p) 부분 참고하여 처리

다. 난민여행증명서 신청 및 발급

1) 기본사항

가) 발급 대상

-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난민인정을 받은 자

나) 발급 목적

- 난민인정자가 출국하려고 할 때에는 그의 신청에 의하여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함
- 다만, 그의 출국이 대한민국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발급하지 않음

다) 발급 시기

○ 발급 대상자가 출국하고자 하여 발급신청을 한 때

라) 유효기간

○ 난민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은 3년(체류허가 기간과 상관없음)

마) 신청

○ 발급 신청인은 난민여행증명서 발급신청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6호의11 서식)에 제출 서류를 첨부하여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하 청장 등)에게 제출

○ 제출서류

- 난민인정증명서 사본 1부
-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자에 한함)
- 반명합판 천연색 사진(3.5cm X 4.5cm) 1장
※ 사진의 규격 등은 체류관리 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름
- 수수료 1만원

바) 심사

○ 청장 등은 난민여행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조사하여야 함

- 신청인의 난민인정의 취소 여부 또는 난민인정 취소대상인지 여부
- 그의 출국이 대한민국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5 제4항*에 따라 입국 기간(3개월 이상 1년 미만)을 특히 제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 법무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3개월 이상 1년 미만의 범위에서 입국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할 수 있음

사) 발급 결정 및 발급 요청

○ 청장 등은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조폐공사에 난민여행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다음 사항을 송부하여 난민여행증명서 발급의뢰를 하여야 함

- 난민여행증명서 허가 정보 : 발급번호, 발급일자, 만료일
- 신청자 정보 :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성별, 출생지, 신청자 사진
 - ※ 한국조폐공사는 접수된 데이터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검증 수단이 없으므로 데이터 송부 시 송신 데이터의 정확성 및 신청자 사진 규격 준수 여부를 필히 확인하여야 함
- 단, 청장 등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8조의10(난민여행증명서의 발급 등 사무의 대행) 제6항 제3호에 따라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신청인에게 그 이유 등을 통지함

아) 교부

- 청장 등은 난민여행증명서 발급대장(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6호의13 서식)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인수증에 서명을 하게 한 후 난민여행증명서를 교부함
 - ☞ 인수증은 출입국관리시스템의 '인수증 출력' 탭에서 출력 가능
 - ※ 난민여행증명서 교부 시 체류기간 내 재입국하도록 안내, 체류기간 내 재입국하지 않을 경우 체류자격 변경 등 절차를 거쳐야 함을 안내

2) 난민여행증명서 유효기간 연장

가) 신청

- 난민인정자가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난민여행증명서 유효기간 안에 입국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의 제출 서류를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함

나) 제출서류

- 난민여행증명서 유효기간 연장허가신청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6의14 서식)
-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

다) 난민여행증명서 유효기간 연장 시기

- 난민여행증명서 유효기간 만료일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만료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난민인정자의 체류기간을 고려하여

6개월 범위에서 유효기간 연장 허가

※ (예시) 난민여행증명서 유효기간이 2014. 1. 31.인 난민인정자(체류기간 만료일 2014. 7. 31.)가 2014. 3. 1. 재외공관에 난민여행증명서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한 경우 2014. 7. 31.까지 난민여행증명서 유효기간 연장 허가

- 단, 체류기간이 이미 도과된 경우에는 난민여행증명서 유효기간 연장 불허
- 난민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난민여행증명서 재발급 받도록 안내

라) 조치사항

⇒ 재외공관은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접수한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유효기간을 연장허가하고 다음과 같이 조치

- 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 연장 란에 유효기간 연장사항 기재
- 법무부장관에게 유효기간 연장허가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
- 법무부장관은 재외공관의 장으로부터 여행증명서 유효기간 연장 보고를 받은 때에는 청장 등에게 통보함

3) 재입국허가

- 유효기한 내 횟수 제한 없이 재입국 가능
-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3월 이상 1년 미만으로 국내 입국기간을 한정할 수 있음
 - 입국기간을 한정하는 경우, 반드시 신청인에게 고지
- 체류기간 도과 후 입국한 경우 입국 시 공항만청장(사무소장)은 국적에 따라 사증면제, 무사증 또는 단기 일반(C-3-1, 30일) 자격으로 입국허가
 - ※ 입국 후 체류지 관할 사무소에서 체류기간 도과 전 체류자격 변경 (F-2-4)절차를 받도록 안내할 것

4) 난민여행증명서 재발급 절차 등

가) 재발급 사유

- 난민여행증명서가 분실되거나 없어진 경우
- 난민여행증명서가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
- 기타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난민여행증명서의 사증란에 심사인을 날인할 공간이 없는 경우
 - ☞ 위변조방지 및 개선 등을 위하여 난민여행증명서를 한꺼번에 갱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 유효한 난민여행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이 새로운 난민여행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지하고 있던 난민여행증명서를 반납하여야 함
- 다만, 난민여행증명서가 훼손되었거나 심사인을 날인할 공간이 없어 재발급하는 경우 등 구 난민여행증명서를 계속하여 소지할 필요가 있으면 구 난민여행증명서에 'USED' 날인 후 신 난민여행증명서와 붙여서 소지하도록 함

나) 신청 기한

- 재발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단, 사유발생 후 14일이 지난 타당한 지연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급할 수 있음

다) 재발급 절차

- 재발급 신청 접수 기관
 - (대한민국 안에서의 신청) 관할 청장 등에게 재발급 신청
 - (대한민국 밖에서의 신청)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
- 제출서류
 - 난민여행증명서 재발급신청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6호의 11 서식)
 -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
 - 반명합판 천연색 사진(3.5cm X 4.5cm) 2장
 - ※ 난민여행증명서 발급시 사진규격과 동일
 - 현재 가지고 있는 난민여행증명서
 - ☞ 분실 시 분실사유서 등 제출

- 수수료 1만원

○ 난민여행증명서 재발급 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은 청장 등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함

라) 재발급 심사, 결정 및 요청 등

○ 재발급 심사, 결정 및 요청은 동 지침의 난민여행증명서의 발급 심사, 결정 및 요청의 처리절차를 준용

- 단, 청장 등이 대한민국 밖에 있는 신청인에게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신청인에게 재외공관 등을 거쳐 그 이유 등을 통지함

마) 교부

○ 청장 등은 난민여행증명서를 재발급하는 때에는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대장에 재발급 등의 사실을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인수증에 서명을 하게 한 후, 교부하여야 함

- 신청인이 대한민국 밖에 있는 경우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발급된 난민여행증명서와 인수증을 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하고, 재외공관의 장은 송부 받은 난민여행증명서를 신청인에게 인수증에 서명을 하게 한 후 교부하고, 교부사실을 청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함

○ 분실 사유로 난민여행증명서 재발급 시, 분실된 난민여행증명서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음을 안내하고 당사자로부터 확인서 징구

5) 난민여행증명서 등 반납

가) 반납 대상

○ 난민인정을 받은 외국인이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난민인정증명서와 난민여행증명서를 청장 등에게 반납하여야 함

- 청장 등으로부터 강제퇴거명령서가 발부된 때

-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는 결정통지를 받은 때
-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난민인정취소 또는 철회 통지를 받은 때
- 법무부장관은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은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안전을 해칠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난민여행증명서의 반납을 명할 수 있음

나) 반납기한

-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14일 이내의 기간

다) 반납명령 절차

- 법무부장관이 난민여행증명서 반납명령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6호의15 서식)를 청장 등을 거쳐 그 외국인에게 교부

라) 난민여행증명서의 효력 상실

- 난민여행증명서를 반납한 때 또는 반납기한이 경과한 때

6) 분실 또는 효력이 상실된 난민여행증명서에 대한 조치사항

가) 조치 대상

- 분실된 난민여행증명서
- 난민여행증명서 반납명령서 상 반납기한이 경과하여 효력이 상실된 난민여행증명서

나) 조치 내용

- 난민여행증명서 분실 사유로 재발급 신청을 접수한 청 등 또는 난민여행증명서 반납명령서를 교부한 청 등은 ICRM 「출입국심사」 화면 「관리대상자」 창에 입력

※ 입력 예시(해제일자는 난민여행증명서 유효기간)

- ▶ 출국 시 조치대상 난민여행증명서 행사 사실을 적발할 경우
→ 출국 보류, 새로운 난민여행증명서로 출국토록 안내(구 난민여행증명서 'USED' 날인)
- ▶ 입국 시 조치대상 난민여행증명서 행사 사실을 적발할 경우
→ 본인여부 확인하여 본인임이 확인되면 분실 난민여행증명서 행사 경위 등을 조사하여 입국조치 여부 결정(구 난민여행증명서 'USED' 날인)

7) 보고사항

- 청장 등은 난민여행증명서 발급현황을 정기적으로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라. 법 위반자 처리방법

- 체류자격부여, 체류자격변경허가 등을 위반한 경우 출입국관리법령 및 해당 지침에 따라 처리
- 취업활동의 제한은 없으나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식품위생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사행행위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령 및 해당 지침에 따라 처벌

마. 배우자 등에 대한 사증발급 등(난민인정자 가족결합)

1) 가족결합의 원칙

- 난민법은 난민인정자에 대하여 헤어진 가족의 재결합을 보장함으로써 난민과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법상의 가족결합 원칙(principle of family unity)을 규정

2) 가족결합의 대상 및 범위

- 가족결합의 대상이 되는 자는 난민인정자에 한함
 - ※ 난민신청자 혹은 인도적체류자는 가족결합의 대상에서 제외
- 난민인정자의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및 그의 미성년 자녀에 한함
 - 원칙적으로 배우자는 본국에서 합법적인 혼인관계가 인정(공적 서류 입증)되어야 함
 - ※ 다만, 국내에서 체류자격변경 시 공적인 혼인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실혼 관계 인정
 - 자녀는 배우자가 없는 미성년에 한함(민법 제4조에 따른 19세 미만의 자)
 - ※ 성년인 자녀는 일반적인 입국심사 및 체류절차에 따라 처리
 - 그 밖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은 가족결합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 난민인정자의 가족인 경우에도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의한 입국금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국 불허

3) 난민인정자 가족에 대한 사증 발급 절차

가) 사증발급 절차

- 난민인정자의 가족이 난민인정자와의 가족결합을 위하여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 단기방문(C-3, 90일) 체류자격으로 사증 발급
 - 난민인정자가 난민인정을 받은 사실
 - 난민인정자의 가족임을 입증하는 서류
 - 난민인정자와의 가족결합 희망 여부

- 재외공관의 장은 사증을 발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난민인정자의 난민인정 사실 및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음

나) 가족결합을 위한 사증발급 신청 시 확인 서류

○ 배우자 입증서류

- 여권
- 가족관계증명서 등 배우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결혼증명서 등 혼인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그 밖에 혼인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난민인정자의 미성년 자녀 입증서류

- 여권
- 출생증명서 등 부모와의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미성년 자녀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미성년 자녀의 혼인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미성년 자녀의 혼인유무가 의심스러울 경우에만 징구

4) 가족결합 대상자에 대한 입국심사 절차

가) 일반 절차

- 가족결합을 희망하는 난민인정자의 배우자 및 그 미성년 자녀가 출입국항에서 입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가족결합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입국심사

나) 입국금지대상자에 대한 처리절차

- 가족결합을 희망하는 난민인정자의 가족이 제11조제1항의 입국금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입국 불허
- 다만, 입국금지대상자인 경우에도 인도적사유 등 입국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입국을 허가

다) 사증 없이 도착한 자에 대한 처리절차

○ 일반 외국인의 입국허가 절차에 따라 처리

5) 난민인정자의 가족 체류자격 부여·변경 (→세분류코드 F-1-16) · 취업허가 등 가) 체류자격 부여·변경 허가

○ 기본원칙

- 난민인정자의 가족(배우자, 미성년 자녀)이 자격부여(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난민인정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방문동거 자격(F-1-16)으로 체류자격 부여·변경

※ 방문동거(F-1) 체류자격 소지자도 난민인정 신청을 한 경우에는 난민법에 따른 생계비 지원 등 난민신청자로서의 지위 및 권리 보장

○ 배우자의 가족결합

- 주신청자의 난민신청일(재신청자는 최초 난민신청일 기준) 이후에 가족관계가 형성되었고, 자신의 독자적 난민인정 사유가 없어 난민불인정 결정을 받은 경우 “난민인정자 가족(F-1-16)”으로 체류허가

※ ICRM 및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에 “난민인정자 가족(F-1-16) 체류자격 부여대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지 반드시 확인

- 원칙적으로 배우자는 본국 또는 국내에서 합법적인 혼인관계가 인정(공적 서류로 입증)되는 자여야 함

- 다만, 혼인관계를 입증하는 공적인 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실혼 관계 인정. 단, 실태조사를 통해 혼인 경위, 실제 동거 여부, 자녀 유무,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못하는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 미성년 자녀의 가족결합

- 이혼 및 재혼 등으로 인해 부모 모두 독자적 사유 없이 가족결합으로 난민인정 받은 자의 미성년 자녀(국내출생자 포함)는 자신의 독자적 난민인정 사유가 없어 난민 불인정결정 받는 경우 “난민인정자 가족(F-1-16)”으로 체류허가

※ ICRM 및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에 “난민인정자 가족(F-1-16) 체류자격

부여대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지 반드시 확인하고 국내 출생

※ 자녀가 부모 국적국의 국적관련 법령으로 국적을 부여받지 못하는 경우
본부와 협의하여 체류허가 여부 결정

○ 1회 부여 체류기간

- 난민인정자의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최대 2년 체류기간 부여·변경

○ 제출서류

- 신청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

- 여권

- 주신청자의 난민인정증명서(난민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 난민인정자의 가족임을 입증하는 서류

☞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 결혼증명서, 혼인신고 수리증명서
등 혼인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미성년 자녀) 출생증명서 등 부모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체류지 입증 서류

☞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 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교회·난민지원시설·
인권단체·UNHCR 등의 주거확인서 등

- 결핵검진확인서(결핵 고위험 19개 국가 국민)

※ 「외국인 결핵 환자에 대한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에서 정한 결핵검진
확인서(진단서)

- 반명합판 천연색 사진(3.5cm X 4.5cm) 1장

※ 사진의 규격 등은 체류관리 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름

나) 체류기간 연장 허가

○ 주신청자의 난민인정이 취소·철회되지 않는 한 체류기간 연장 가능

다) 취업허가

○ 인도적체류자에 대한 취업허가 절차 및 기준 준용

※ 취업활동 허가 위반자의 경우에도 인도적체류자 법 위반자 처리절차 준용

라) 불법체류 중 난민인정자 가족결합 신청자 처리방법

- 불법체류기간 계산
 - 체류허가 신청일 기준으로 불법체류기간 계산
- 통고처분 면제(범칙금 면제) 대상
 - 자진출석한 사람으로 국내 체류기간이 입국일로부터 1년 이내이고 불법체류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 통고처분(범칙금 부과) 대상
 - 원칙적으로 상기 통고처분 면제 대상을 제외하고는 통고처분 후 체류허가
- 동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법령 및 지침에 따름

마) 난민인정신청 접수 및 심사

- 난민인정자의 배우자 등 가족이 난민인정자와 동일한 사유 등으로 난민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난민인정 신청 접수
- 접수한 난민인정 신청건은 신속절차에 따라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심사결정 완료(단, 청 등 인력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바. 난민인정 취소된 자의 체류

1) 체류담당 부서

- 출국자(등록증 미반납) : 관할 청 등은 난민인정 결정 취소된 자가 출국한 경우 참고사항에 관련 내용 입력 후 출국일 기준으로 완전출국 정리
- 국내 합법체류자 : 난민담당자로부터 통보 받은 후 지체 없이 출석요구서 (참고사항 입력) 발부

출석자	불출석자	
더 이상 국내 체류할 수 없음을 고지하고 출입국관리법 제89조에 따라 체류허가 취소* 후 사범담당자에 인계	출석요구서 반송 시	출석요구서 공시송달(출입국관리법 제91조 ②항) ⇒ 체류허가 취소 및 소재불명 입력 ⇒ 체류허가 취소 통지 공시송달
	출석요구서 정상 수령 후 불출석 시	체류허가 취소 ⇒ 체류허가 취소 통지 송달 (반송 시 공시송달)

* 「외국인등록」 화면 체류신청 및 허가사항 허가구분에서 "취소(철회성)" 항목 선택 후 체류기간 정정

2) 사범담당 부서

- 체류허가 취소 후 사범과에 인계된 자 출입국관리법 제68조에 따라 출국명령

3) 행정사항

- 난민인정이 취소된 자가 이의신청을 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면 관련 절차 종료 시까지 3개월 범위 내에서 출국기한 유예

사. 난민인정 철회된 자의 체류

1) 체류담당 부서

- 출국자(등록증 미반납) : 관할 청 등은 난민인정 결정 철회된 자가 출국한 경우 참고사항에 관련 내용 입력 후 출국일 기준으로 완전출국 정리
- 국내 합법체류자 : 난민담당자로부터 통보 받은 후 지체 없이 출석요구서 (참고사항 입력) 발부

출석자	불출석자	
더 이상 국내 체류할 수 없음을 고지하고 출입국관리법 제89조에 따라 체류허가 취소* 후 사범 담당자에 인계	출석요구서 반송 시	출석요구서 공시송달(출입국관리법 제91조 ②항) ⇒ 체류허가 취소 및 소재불명 입력 ⇒ 체류허가 취소 통지 공시송달
	출석요구서 정상 수령 후 불출석 시	체류허가 취소 ⇒ 체류허가 취소 통지 송달 (반송 시 공시송달)

* 「외국인등록」 화면 체류신청 및 허가사항 허가구분에서 "취소(철회성)" 항목 선택 후 체류기간 정정

- 체류기간 만료일에 임박한 자(체류기간 만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가 자진출석하여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한 경우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 등 불허결정 통지서를 발급하고, 발급일로부터 14일까지 출국기한 명시
- 출국기한 유예 신청 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처리

2) 사범담당 부서

- 체류허가 취소 후 사범과에 인계된 자 출입국관리법 제68조에 따라 출국명령

3) 행정사항

- 난민인정 철회된 자가 이의신청을 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면 관련 절차 종료 시까지 3개월 범위 내에서 출국기한 유예